

경기도 공고 제 2023 - 5697 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효력재개 공고

경기도 공고 제 2022-5812(2021.7.29.)호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의 효력을 재개됨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 년 7 월 5 일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공고내용 (영업정지 잔여기간)	효력재개 사유
(주)인스그린 (최정석)	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74 번길 42, 3 층(관고동)	토목건축 공사업 (16-0146)	영업정지 4개월 (2023.07.17. ~2023.11.16.)	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(2022구단9904) 원고패소에 따른 효력재개 (판결선고일 : 2023.6.16.)